

[검토보고서]

2015. 10. 20(화) 제 2 6 2 회 임 시 회

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



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과

○ 제안자 : 양주시장(청소행정과)

○ 제출일 : 2015년 10월 7일

○ 검토일 : 2015년 10월 8일

2. 제안이유

-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
-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개정 권고사항 반영 및 타 조례와 중복 되는 유사조항을 삭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소요비용은 당해 택지 조성원가에 부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함(안 제3조제2항)
-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200톤 규모 소각시설 설치비에 그 택지에서 발생되는 예상 폐기물량에 연간 가동율 및 월 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로 추가함(안 제3조제3항 ~ 5항)
-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30톤 규모 퇴비화.사료화 시설 설치비에 그 택지에서 발생되는 예상 폐기물량에 연간 가동율 및 월 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 편익시설 설치비로 추가함(안 제3조제6항~8항)
-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후 발생되는 소각잔재물 및 불연성 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매립시설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(안 제7조)
- 주민지원기금 재원 조성 및 주민감시요원 수당 관련 타 조례와 중복되는 유사조항 삭제(안 제10조, 제12조)

4. 검토의견

가. 법령검토

- 본 조례는 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)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
-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과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나. 정책 및 내용검토

○ 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월 최대 변동계수를 표준안에서 허용한 최대치인 1.29로 정하고 연간 가동율의 기준일을 300일로 정하였으나 이는 택지개발사업의 설치비용 납부액 산정에 직접 적용 되는 계수로 표준안에서 허용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은 바람직함

※ 월 최대 변동계수는 높을수록, 연간 가동율은 낮을수록 납부액은 증가됨

○ 안 제7조에서는 영 제23조 제2호¹)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할 시설을 "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후 발생되는 소각 잔재물을 처리하기 위한 매립시설로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"로 정하였으며 이는 일일 처리용량이 200톤인 양주권 자원회수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잔재물을 30년간 매립할 수 있는 규모(청소행정과 분석)에 해당되며 인근 의정부시와 포천시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임.

¹⁾ 제23조(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) 법 제19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
^{1.}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

^{2.}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

○ 현행 제10조와 제11조는 「양주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」에 중복 규정된 조항으로 삭제하여도 무방함.

다. 형식검토

○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.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음.

라. 절차검토

○ 입법예고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음.

마. 의정협의회 결과

○ 제18차 의정협의회시 제시되었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3조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비용 납부액에 주민편의시설 설치비를 포함하였음.